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8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1년 4월 26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업체에 대한 부적격 단속사항 중 시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 야기소지가 있는 사항과 과도한 수시 단속으로 업체 경영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부적격 단속사항 중 “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”를 삭제함(안 제9조제1항제4호).
- 안 제9조제3항 중 “수시단속”을 “수시단속(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수정함(안 제9조제3항)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시단속”을 “수시 단속(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
공의무 위반, 법 제29조에
따른 일괄하도급·재하도
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
체로 인정되는 경우

**4.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
체로 판단하는 경우**

-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
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
업체에 대해서는 직접, 전문
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
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
수 있다.
-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
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
받을 수 있으며, 수시단속
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
단속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
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
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
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
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
는 제외한다.
-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
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
법 제83조 및 제83조의2
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
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
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
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
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
률」 제13조 및 제30조의
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
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
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
취소할 수 있다.
-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

〈삭 제〉

② -----

③ -----
----- 수시단
속(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
하는 경우에 한한다) -----

④ -----

⑤ -----

⑥ -----

<p><u>제9조</u>·<u>제10조</u> (생략)</p>	<p><u>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</u> <u>제10조</u>·<u>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. 제10조·제11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부적격업체”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 (부적격업체 단속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

2.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

3.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,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,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·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,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수시단속(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)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.

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30조의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지역 내에서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을 말한다.</p> <p>2. ·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----- -----.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부적격업체”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9조 (부적격업체 단속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</p> <p>2.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</p>

의 배치 위반

3.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
하도급 금지 위반, 법 제28조의
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,
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
· 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
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
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
해서는 직접, 전문건설업체에 대
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
단속할 수 있다.

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
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
수 있으며, 수시단속(민원 또는
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)
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
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
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
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
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
업체는 제외한다.

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
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
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
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
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

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30조의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
제9조·제10조 (생략)

제10조·제11조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